

시멘트 · 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최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 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층건축물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앞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하여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협력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고층건축물과 같이 높은 구조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도 공사 중에는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 하는 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지고, 구조 분야에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